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29 선고 2018가단966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

피 고 B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19. 5. 1.

판결 선고 2019. 5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4,535,284원 및 그중 82,899,999원에 대하여 2017. 3. 21.부터 2018. 5. 7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주식회사 C, D 주식회사(이하 'C 등'이라고 한다)와 사이에, 2015. 9. 17.E
방수공사(이하 '방수공사'라고 한다)를 계약금액 183,329,793원에, 같은 날 위 E 액체방수 등
공사(이하 '액체방수공사'라고 한다)를 계약금액 296,670,207원에, 2015. 11.9. 위 E
조적공사(이하 '조적공사'라고 한다)를 349,000,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각하도급계약(이하 '이
사건 각 하도급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C 등에 각 계약금액의 10%를 계약보증금으로
지급하기로 하면서, 피고의 계약불이행, 채권압류, 태업, 공사포기, 부도, 기만행위 등의 귀책사유에
의해 계약이 해제(해지)될 경우 C 등은 위약별로 피고의 계약이 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
정하였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
아래와 같이 각 이행(계약)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
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보증보험증권을 C 등에 교부하였다.

순번	체결일	주계약(공사내용)	피보험자	보험가입금액
1	2015. 9. 18.	방수공사 ¹⁾	C 등	18,332,979원
2	2015. 9. 18.	액체방수공사	C 등	29,667,020원
3	2015. 11. 11.	조적공사	C 등	34,900,000원
합 계				82,899,999원

라.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는 피고가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
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,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피보험자가 몰수 또는
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. 또한 이 사건 각보증보험계약에서는 원고의 구상금에
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
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. 이 사건 각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공시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
날부터 30일 동안은 연6%, 그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은 연 9%,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%이다.

마. 피고는 2016. 5. 20.과 2016. 5. 31. C 등에,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잔여공사를

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사포기승인요청서를 보냈다.

바. C 등은 2016. 10. 27.경 원고에게,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중도정산(속칭: 타절)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. 사. 원고는 2016. 12. 20. C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82,899,999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4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2,899,9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의 주장

피고는 C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액체방수공사, 조적공사의 일부만을 미시공하였다. 피고는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에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C 등과 협의하여 공사포기승인요청 공문을 보냈을 뿐 이후에도 피고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 공사포기승인요청은 효력이 없다. 피고가 2016. 7. 11. C 등에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한 데 대하여 C 등이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정산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,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.

2) 판단

갑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피고는 2016. 3.경부터 위 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, 피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6. 5. 20.과 2016. 5. 31. 주식회사 C에, '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기일,

노임지급 등에 피해가 우려되어 남은 공사를 포기한다'는 취지의 공사포기승인요청서를 보낸 사실, 이후 C 등은 남은 공사를 직영의 방법으로 마무리한 사실이 인정되고,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.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등으로 84,535,284원(= 보험금 합계 82,899,999원+ 위 보험금에 대하여 2016. 12. 21.부터 2017. 3. 20.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 1,635,285원) 및 그중 82,899,999원에 대하여 2017. 3. 2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8. 5. 7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금영

1) 최초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우레탄도막방수공사로 주계약의 명칭을 특정하였다가 2015. 10. 8. 방수공사로 주계약의 명칭을 변경하였다.